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761
------	------

2021. 11. 2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2일, 김인제 의원(찬성의원 16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 제1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11.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인제 의원)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개정에 관한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우리말 사용을 한층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 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명문화 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자치법규 정비 현황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책 실현의 규범이 되므로 주민생활과 지방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정비해야 함.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위반 등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해 정비하고 있음.
- 매년 6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소관 부서 의견을 거쳐 일괄정비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의원발의 형태로 일괄정비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조례안 의원발의 현황 >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례정비대상
			발의일
			처리결과
1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조례에 쓰이는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함. - 기타(其他)→그 밖에, 당해(當該)→해당 등	53개
			2021.10.12
			발의
2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조례의 일본어식 한자어 표현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일괄정비함. - 감안→고려, 명기→명확하게 적을 것 등	21개
			2021.2.5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함. - 기타(其他)→그 밖에, 당해(當該)→해당 등	205개
			2019.8.23
			수정가결

다.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개정(안 제3조)

-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기본원칙에 명문화하고 있음.
- 우리의 법령은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 법령의 도입 등으로 인해 어려운 한자어와 우리 표현에 맞지 않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 등이 잔존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어려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용어 순화사업과 법률 한글화 사업을 거쳐 현재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이나 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며, 장애인 비하 표현, 차별적·권위적 용어, 전문분야의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에 집중해 오고 있음.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시민이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법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등이 포함된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문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은 일반시민을 법률관계에서 소외시켜 왔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토록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6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2일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기대,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장상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용어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작성 원칙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치법규에 관한 문서는 공문서 중 법규문서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7조의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서 작성을 하여야 하나 같은 조항에서는 일본식 표현·어투 등의 용어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자치법규 입안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 제·개정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나목)을 고려해,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 입안 시 우리말 사용을 한층 장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입법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명문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본 원칙) ①·② (생략)</p> <p>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뚜렷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u>사용</u>하여야 한다.</p>	<p>제3조(기본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u>----</p>